

한 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전위원회 내규

제정 2020. 3. 1

개정 2022. 2.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의과대학 부학장
2.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대학원 한의학과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
2. 한의학과 동문회장 혹은 대구한의대학교 총동문회장
3. 한의학과 학부모 대표
4.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2명 이상
6. 기타 교육, 보건 등 한의과대학 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부위원 2명 이상

제3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의과대학 사명과 핵심가치에 관한 사항
2. 한의과대학 비전에 관한 사항
3.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발전계획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한의과대학 발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